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5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21.

발의자 : 성일종 · 김정재 · 김석기
정진석 · 이명수 · 김태흠
홍문종 · 정운천 · 유의동
박명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,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(入殖費)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는 그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상수온이라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고자 함(안 제4조제3항제4호).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4호 중 “적조현상으로”를 “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상수온에 의하여 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· ② (생략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~ 3. (생 략) 4. <u>적조현상으로</u>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: 입식비(入殖費)</p> <p>④ ~ ⑧ (생 략)</p>	<p>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~ ⑧ (현행과 같음)</p>